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 협력업체를 육성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②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STX중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기준

제3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30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필요 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당사 신규 협력업체 등록기준 적합한 업체로 하며, 이의 주요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해야 한다.

1.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생산설비, 안전환경 기준, 품질경영, 보유 기술인력 등
3. 동일 또는 유사 거래 실적 및 평판 등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규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사실상의 독과점 업체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지정된 경우
2. 경영상의 필요로 일회성 거래를 하는 경우
3. 기존 등록업체의 분사나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제5조 (협력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단, 기간의 단축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단축 할 수 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6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제7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

1.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입류 및 가처분 포함), 휴업, 반복적인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품질 및 납기 등에 문제를 야기하여 당사의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5.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정기신용평가 결과가 당사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협력업체의 경우

③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기준 위반 시 징계)

①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의 위반에 따른 처벌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2. 6. 28)

이 지침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